

부속서 8-다
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¹

일반 원칙

1. 이 부속서는 국경 안전을 보장하고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, 양국의 법 및 규정과 이 장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약속에 따라 자연인의 입국과 일시 체류를 촉진하고,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투명한 조치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을 반영한다.

일반 의무

2. 각 당사국은 제1항에 따라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, 특히,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적용한다.

입국 및 일시 체류의 허용

3. 양 당사국은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.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제8.6조에 언급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.

4. 이 부속서에 따라 그리고 각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를 조건으로, 한쪽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. 다만, 그 자연인은

가. 허용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규정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한다. 그리고

나. 입국 및 일시 체류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을 충족해

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부속서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야 한다.

5.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장에 따른 서비스 무역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임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.

6.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, 그 자연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어떠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.

투명성

7. 제1.7조(투명성)에 더하여, 각 당사국은

가. 다른 쪽 당사국이 이 부속서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
나.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, 가능한 한도에서,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,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을 포함하여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및 일시 체류 요건에 관한 설명 정보를 작성, 공표 및 이용 가능하게 한다. 그리고

다.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,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.

8. 각 당사국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명시된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.

9.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, 그 당사국은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의 결과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.

협력

10.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를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합의된 협력 분야를 논의할 수 있으며, 이는 협상 과정에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제안한 분야 또는 양 당사국이 확인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를 고려한다.

분쟁해결

11.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협의를 통하여 호의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
12. 양 당사국이 제1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부속서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, 제15장(분쟁해결)이 그 문제에 적용된다.

13.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, 당사국은 이 부속서에 따른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15장(분쟁해결)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.

가.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, 그리고

나. 영향을 받은 자연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

14.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,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자연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, 제1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.